

# 밀알의빛 총회 운영 규약

2022.08.22. 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약은 총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의안'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말한다.
2. '안건'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.
3. '의결'은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한다.
4. '표결'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 제2장 총회의 운영

**제4조(총회 개최 및 소집)** ① 조합의 총회 개최 및 소집 통지는 정관 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로 전자문서(이메일) 또는 SNS로 할 수 있다.

**제5조(의결권 및 선거권)**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제34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.

1. 총회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
2. 총회일 현재 탈퇴처리 된 자 또는 총회에서 제명이 승인된 자

**제6조(대리인의 자격)** ① 대리인의 자격은 기본법 23조(의결권 및 선거권)와 정관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조합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총회 개회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참석)** ①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8조(의결정족수)**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조합의 합병·분할·해산·휴업 또는 계속
3. 조합원의 제명
4.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
② 조합의 주사업 변경의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의결사항)**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기본법 29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와 정관 제31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.

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의사의 진행)**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으로 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11조(정회 또는 회기 연장)**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정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(표결방법)** 표결은 거수,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방식을 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표결절차)** 표결절차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순서대로 한다.

1. 의안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장이 한다.
2. 의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
3. 표결방법 제안
4. 표결
5.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

**제14조(표결의 순위)**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.

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.

**제15조(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)**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기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②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총회의 종류
2. 총회공고일자
3. 개최 일시 및 장소
4.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
5. 회의의 목적 사항
6.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여부
7.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
8.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16조(회의의 공개)**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

## **부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약은 조합 내에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